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509 발의연월일: 2025. 5. 14.

발 의 자:이훈기·문진석·정을호

박민규 • 박지원 • 유동수

김교흥 • 정일영 • 맹성규

노종면 • 이정문 • 김영배

김용만 · 허종식 · 조인철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사망하기 전에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남긴 게시글 등의 정보(이하 "디지털정보"라 함)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용자가 사망한 후에도 상속인 등이 이를 승계하여 보존·관리하고자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디지털정보의 처리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용자가 지정한 처리방법에 따라 디지털정보를 처리하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디지털정보처리방법의 변경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등 디지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신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44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4조의11(디지털정보의 처리)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하 "디지털정보처리자"라 한다)는 이용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용자가 사망하기 전에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게재・유통한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동영상 등의 정보로서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에서 처리・보관 중인 대통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디지털정보"라 한다)의 삭제, 상속, 대리인 지정 등 이용자가 사전에 지정한 처리방법(이하 "디지털정보처리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디지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② 디지털정보처리자는 이용자가 디지털정보처리방법을 사전에 지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③ 디지털정보처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디지털정보처리방법의 변경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디지털정보처리방법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디지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44조의11(디지털정보의 처리)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
	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하 "디지털정보처리자"라
	한다)는 이용자가 사망하는 경
	우 이용자가 사망하기 전에 정
	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게재ㆍ
	유통한 부호・문자・음성・음
	<u>향·화상·동영상 등의 정보로</u>
	<u>서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u>
	보통신서비스에서 처리・보관
	중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
	보(이하 "디지털정보"라 한다)
	의 삭제, 상속, 대리인 지정 등
	이용자가 사전에 지정한 처리
	방법(이하 "디지털정보처리방
	법"이라 한다)에 따라 디지털
	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디지털정보처리자는 이용자
	가 디지털정보처리방법을 사전
	에 지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u> <u>라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u> <u>다.</u>

- ③ 디지털정보처리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 자에게 디지털정보처리방법의 변경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하고,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디 지털정보처리방법을 변경하여 야 한다.
- ④ 그 밖에 디지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